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12.

연구책임자
백육인(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인터넷, 사상과 표현의 자유	1
1. 인터넷과 민주주의, 인권	1
2. 인터넷과 인권	4
II.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10
1.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10
2.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13
3.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16
III. 현행 규제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 검토	19
1.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19
2. 불법 통신 규정의 문제점	21
IV.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별 검토	25
1. 인터넷 등급제	25
2. 인터넷 실명제	28
3. 검열과 통제 관련 기관의 활동과 문제점	31
V.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방향	37
1. 규제 관련 법률의 폐기	38
2. 인터넷 등급제 폐지	39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	41
4. 검열 기구의 철폐	43
<참고문헌>	44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46
부록 2 정책안 관련 참고 자료	50
자료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심의 내용별 분류표(1997-2002) ·	50
자료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58
자료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세칙	63
자료 4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 선언문	66
자료 5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89
자료 6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91
자료 7 인터넷검열반대 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10
자료 8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 반대 성명서	112
자료 9 부정선거 규제 반대 및 표현의 자유 성명서	114

I. 인터넷, 사상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과 민주주의, 인권

(1) 인터넷, 사상과 표현의 자유

현실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한 참여와 연대이다. ‘민주주의’란 평등한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 및 여론이 모아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민주주의는 ‘컴퓨터로 매개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서 ‘네티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다.

국가의 법적인 규제와 네티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규범 간에는 마찰과 대립이 존재한다. 그런데 네티 사용자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티 시민권 운동의 성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풀뿌리행동주의’(grassroot activism) 및 광범한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운동을 어떻게 확산하는가에 달려 있다. 네티의 생활상의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티의 커뮤니케이션 틀에 주목할 경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고, 공동체적 성격에 주목하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이다.

초기의 인터넷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구조와 특성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규제불가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티의 완전독립론이 헛된 꿈에 불과하듯이 규제불가론도 최근 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규제와 코드를 통한 규제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네티 사용자의 합의와 규범을 통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와는 달리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를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고 코드를 활용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기술적 강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통합형 규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내용 등급제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전자 표식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등급 기준의 내용물을 걸러내어 사용자가 특정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 등급제는 네가티브 검색엔진의 역할을 한다. 등급제의 픽스(PICS)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것 자체는 콘텐츠에 관한 메타정보를 활용하여 웹 페이지의 내용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표기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¹⁾ 이러한 네가티브 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누가 등급을 정하고 어느 정도의 등급에서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사용자 개인이

1) 픽스는 내용물의 성분을 표시하는 전자 언어로서 검색 소프트웨어나 차단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자동적으로 등급 처리된 내용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픽스는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검색엔진과는 반대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픽스 기반의 인터넷내용등급 시스템에는 RSACi와 ESRB, SafeSurf와 Medcertain, ICRA,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SafeNet, 등이 있다.

스스로 내용물 제한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나 단체가 이를 타율적으로 규제할 경우 픽스 기반 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보통 기계나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는 가치 지향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달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엔진은 선택과 배열을 통하여 내용물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ucas, 1998).

검색엔진의 용도와 기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검색엔진에는 정치적 의도와 상업적인 고려가 깊게 담겨있다. 검색엔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아주지 않는다. 야후(Yahoo)처럼 사업자가 검색 범주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해야하는 경우는 선별과 거름 작용이 반드시 개입한다.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쓰지 않고 스스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검색 없이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 자체가 검열과 통제로 활용될 수 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뒤에는 선택과 배열을 통한 통제와 조작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자동화된 코드를 통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선택과 차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구성원의 알 권리를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하거나 제한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네트 사용자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약을 이루어야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적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월드와이드웹(WWW)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과학자간의 자료와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공유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보자본주의 아래서 인터넷은 빛의 속도로 상업화된다.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정보는 현실세계의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법적인 확립이 정보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일방적인 확립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협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쟁점이 정보기본권이란 차원에서 제기된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재중심화’(recentralization)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몰아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던 흐름도 ‘지적 재산권’의 확대·강화라는 추세에 밀리고 있는 실정

이다.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신경제’는 지적 재산권의 확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보독점과 네트의 재상품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목적은 네트에서 오가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구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안을 확립하는데 있다. 정보자본은 ‘디지털 지적 재산권’의 확보를 자신의 향후 운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정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집단 간의 대립에 따라 상이한 전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곧 디지털 콘텐츠 강국인 선진 자본주의, 특히 미국과 제3세계 간의 대립, 거대 독점자본과 사용자 간의 대립,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 간의 대립 등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축으로 다양한 쟁점이 형성될 것이다. 사용자의 사용권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네트 사회운동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지적 재산권의 전반적인 적용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사적 재산의 보호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지적 재산권은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낳고 이것이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서는 재산을 보장하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재산권인 지적 재산권은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자본주의는 재산권에 근거를 둔 사적 소유체제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이러한 소유체제를 서비스나 지적 생산물에게까지 확장한 배타적 소유개념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공적 이용이 공존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과 공유물(communs)간의 대립,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내세워 무조건 무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지식이 디지털로 전환되더라도 그것의 사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것은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카피레프트의 진정한 의미는 남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을 사회로 환원하여 공유하는 데 있다. 그래서 카피레프트 운동이 사회적 힘을 얻으려면 디지털 공유 운동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건설과 디지털 공유 운동은 카피레프트 운동을 구체화하는 밑바탕을 마련한다. 아카이브는 문명화된 공동체의 필수품이자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현재 리처드 스톨만의 프리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시작된 정보공유의 전통은 리눅스(Linux)로 이어지고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무관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만들어지는 디지털 내용물들의 공유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글, 그림, 영상, 소리로 표현한 갖가지 디지털 정보가 비트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들을 나누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공유를 통해 가능하다. 네티즌이 자신의 말과 소리와 몸짓 하나하나에 지적 재산권을 걸게 되는 날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화하고 상업화한 후 사용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독점적인 카피라이트는 분명 네트의 열린 공간을 닫아버리고 공유의 정신을 독점의 욕심으로 눌러버린다.

인터넷의 미래는 참여자들의 공공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정보를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는 나라와 공공의 정보를 나누는 나라간의 경쟁력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별 것도 아닌 오락정보를 돈주고 파는 나라와 문화유산을 공공의 정보로 제공하는 나라간의 지적 경쟁력은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2. 인터넷과 인권

(1) 인터넷과 관련된 인권의 영역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은 개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의 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그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에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가 크고 그만큼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다.

NEIS, 등급제, 몰래카메라, 실명제, 음란물, 스팸메일 등은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말들이다. 실명제는 익명성을 토대로 전개되던 초기 인터넷이 누렸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음란물을 빌미로 한 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검열과 통제를 합리화한다. 스팸메일과 몰래카메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여지없이 짓밟아 놓는다. 이런 사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위협에 처하게 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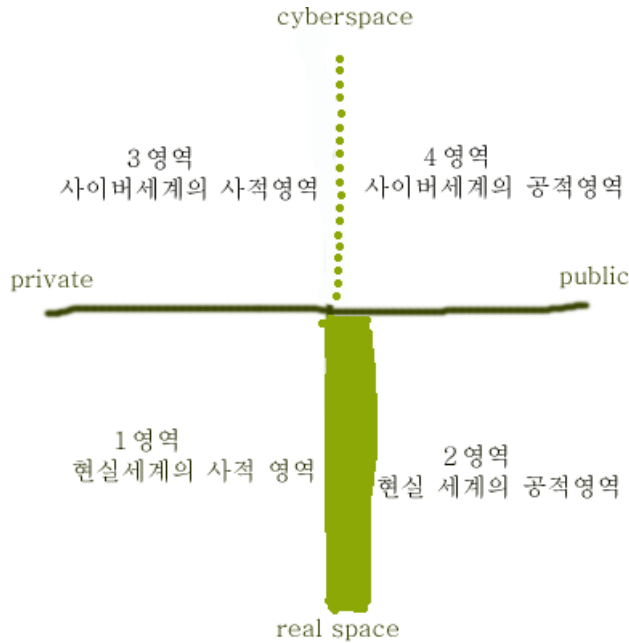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인권문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실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가정, 공간적으로는 집이라는 울타리에 의해 보호된다. 집과 가정은 가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것이다. 그리고 집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되고 있다(헌법 16조/헌법 17조). 한마디로 현실세계의 집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성채라 할 수 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방식은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현실세계의 집은 사적인 휴식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회와 타자로부터 보호되고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집(홈페이지)은 공개성으로 나가는 길목이다. 현실세계의 집은 외부의 공적인 장소와 차단하는 공간이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홈페이지

는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그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어주는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현실 세계의 그것처럼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경계가 불투명해지며 상호간의 이동과 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현실세계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비되는 사이버세계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1영역'(현실세계의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거의 자유(16조)와 신체의 자유(12조) 및 사생활의 비밀(17조)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인권들이다. 1영역과 2영역 사이에는 비교적 분명한 구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고 법률의 틀에서도 민사와 형사로 구분되어 있다. '2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은 교육권(31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등의 사회적 권리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정보기술 발전과 더불어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권 등의 새로운 권리들이 주요한 인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세계의 권리는 개인 정보발신자의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자신의 집을 만들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는 사이버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세계에 존재하는 집의 대들보이다.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확보되므로, 국가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이버세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일 먼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새로운 미디어이자 영토(territory)이기 때문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는 사이버세계의 사적 영역(3영역)과 공적 영역(4영역)을 이어주는 매개이자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림 1> 사이버세계의 인권영역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용이 늘어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와 지적 재산권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제한이 그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자료와 정보는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통제와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와 자본, 혹은 다른 개인에 의하여 사적 정보가 도용되거나 오용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자본과 국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중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한다.

한편 자본은 사적 정보의 공적 활용과 공적 정보의 사적 활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며, 이런 정보와 지식의 독점과 상품화는 곧바로 공적 영역에서 정보불평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문제영역이다. 정보 접근권 및 사용권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 권리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넷와 법적 규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일도 벌어진다.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가 서로 부딪히거나 언론의 자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모순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재산권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와 위배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간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인권 침해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가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법률을 기반으로 개입한다. 국가의 법적 규제가 네티즌의 규범과 대립할 때 인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을 길들여 현실세계의 법적 규제에 대체하려 시도한다. 이에 대해 네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규범의 수호를 내걸며 대항한다. 자유주의와 규제주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있는 네티즌의 규범과 국가의 법적 규제간에 협약과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갖는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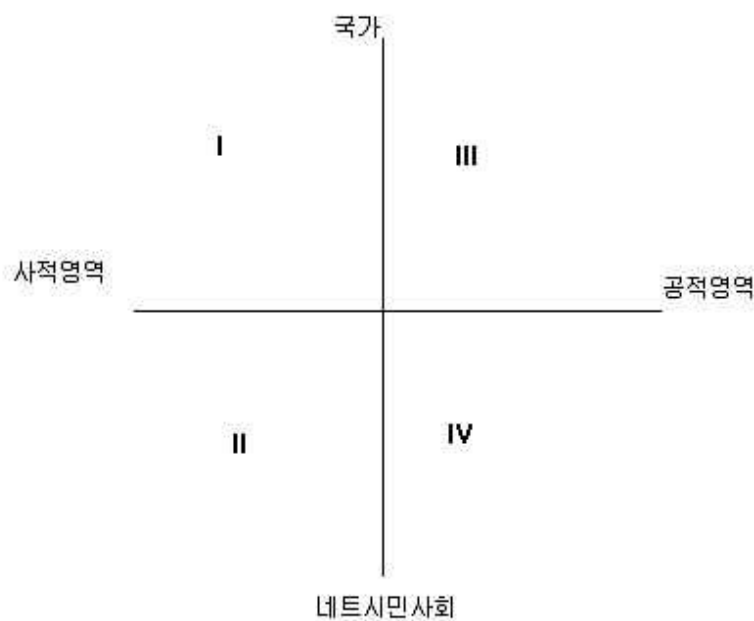
그런데 네티즌의 규범이나 국가의 법률이 일방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주의보다 각각의 영역별로 양자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유연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규범과 법률이 각각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도식화하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한 후 네티즌의 자율적인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분할해 보았다.

다음의 <그림 2>는 국가기관의 법적 규제와 네티 시민사회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축으로 설정하여 작성한 모형이다. 국가 규제가 우세한 사적영역 I은 이메일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적 정보의 보호 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거나 사적 정보가 공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이 영역에서의 규제는 쉽게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기구의 규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도 크게 대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거나 사적 정보를 정권의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막거나 감시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는 데이터베이스 감시(Lyon and Zureik, 1996)로 이루어지는 I 영역에서의 통제와 감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II 영역은 사적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나 자율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일대일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지글이나 대화방 등은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메일을 통한 비동시적 의사소통도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 서로간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이다. 이메일이나 대화방에

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이유는 그곳이 일대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화도청이나 감시가 불법인 것처럼 II 영역에 대한 감시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훼손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를 낳는다.

국가 기관에 이루어지는 감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감시와 통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부실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출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황폐화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I, II 영역은 국가기관의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조심스런 개입과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규제주체와 대상 영역

III 영역은 공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규제 영역이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에 내

용을 규제하는 법안의 경우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 이 영역이 규제에 관한 논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나 불법통신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이에 속한다. III 영역은 II 영역과 달리 완결된 내용을 특정한 관점과 틀로 재단하여 규제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내용이 주로 ‘불법통신’이나 ‘음란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IV영역은 사용자들의 협약을 통해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 영역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규제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자율적 규제의 영역이다. 정보의 발신 주체들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스페이스에 공적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공적 영역에서 통제와 간섭이 이루어질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형성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새로운 공적 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II.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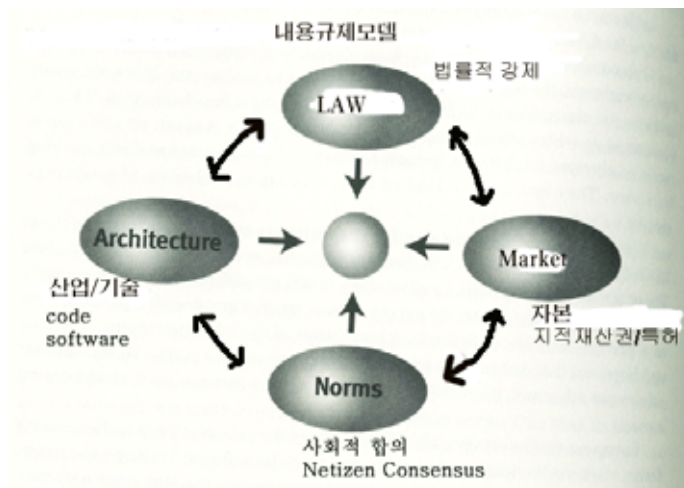
1.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레식(Lessig)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① 규범(norms)을 통한 통제, ② 법률(law)을 통한 통제, 그리고 ③ 소프트웨어의 구조(architecture)를 활용한 통제, ④ 시장(market)을 통한 정보 통제로 분류하였다(그림3 참조). 물론 이러한 네가지 규제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서로 결합되거나 혼합되어 사용된다. 규제 관련 법률은 사용자들의 관습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이버스페이스 전체의 아키텍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규제는 법률을 출발점으로 그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통신관련 품위법」이나 그 밖의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규율을 잡으려 할 때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만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적인 규제에 반해 코드를 사용한 규제²⁾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 주도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엉뚱한 단어를 걸러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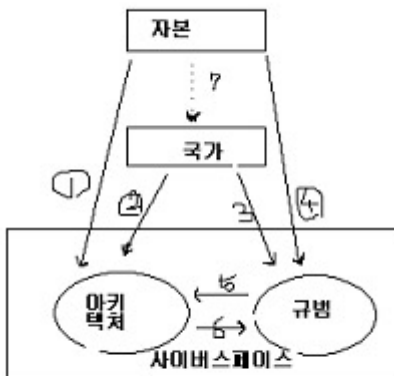
<그림 3 > 인터넷 규제모형



2) 기술적인 규제는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Lessig, 1999).

그러나 레식처럼 규제를 규범, 법률, 소프트웨어, 시장의 네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근거에 관한 부분과 통제의 구체적 방식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있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근거에 따라 국가주도의 타율적인 규제와 시민사회 주도의 자율 규제로 나누는 것이 논의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레식의 분류처럼 기술에 의한 통제와 시장을 통한 통제로 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규제주체를 국가와 네티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스페이스 내부 구성원간의 합의와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규제(⑤, ⑥)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이 코드를 사용한 등급제이건 혹은 특정 내용에 관한 필터링이건 관계없이 이런 경우 규제 주체와 대상이 큰 틀에서 일치하거나 규제 대상이 규제 주체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면 규제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규제(①②③④)에서는 규제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이런 경우를 타율적 규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코드와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통해 규제(①, ②)될 수도 있고 네티즌의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③, ④)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 기구는 법률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그림 4>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의 위상

자본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인 구조와 규범에 개입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자본은 법률을 통해 국가기구를 대행자로 내세워 규제를 가할수(⑦)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처나 규범에 개입할수(①, ④)도 있다. ‘선물경제(gift economy)’와 같은 독특한 관례를 조장했다 급격하게 유료화를 통한 상업적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저작권을 적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선회할 수도 있다. 자본은 시장과 상품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소비규범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킨다(④). 이와 더불어 관련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들은 실제 표준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①). 이런 개입과 규제가 법률적인 형식을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의 자유로운 발전 속에서 전개될 수도 있으며 양자가 결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초기 인터넷의 기술적인 아키텍처와 네티즌들의 관행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네티 사용자들의 규범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네티즌의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제와 대책없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감행할 경우 네티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티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티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 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네티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법적 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인터넷은 미디어인 동시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공의 공간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일반 미디어와 달리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일반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방송이나 출판사, 각종 미디어 제작물 등이 그 대상이고 그 성격상 대부분이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들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양방향적이고 다방향적인 복합 매체이다. 인터넷은 내용물이나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자는 메시지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공적 공간을 만드는 공동체의 터전이기도 하다.

공적 공간이자 공동체인 인터넷에서는 현실사회에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심한 욕설과 음란물도 오고갈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 사회보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내용물의 자동 저장성 때문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냥 묻혀버린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억의 장소이자 저장의 공간이기에 그런 행위와 내용들이 정보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네트는 동시성의 매체인 동시에 비동시성의 매체이다. 채팅과 쪽지는 동시적이지만 게시판에 남긴 글은 비동시적이다. 그것은 글쓰기와 함께 네트에 남아 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속되는 기록물이다. 말처럼 올린 게시판의 글들은 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글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이 네트에 올려진 콘텐츠가 내용 규제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1) 법적 규제와 네트의 주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규범은 현실 사회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자유로운 생각들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큰 자율과 참여가 보장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규범 또한 현실세계에 비해 훨씬 더 참여지향적이고 열려있다.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에 주목한 허번(Hauben, 1997)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현실세계와는 다른 공동체적 지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을 네트의 시민(Net Citizen), 곧 '네티즌(Netizen)'이라 불렀다.

'네티즌'은 공동 작업의 가치를 이해하며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공동체적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은 정부나 자본이 제공해주는 정보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참여와 연대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네티즌의 합의와 자발적 노력만이 인터넷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은 아주 빨리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상업화는 사용자의 공동체적 지향을 약화시키는 한편 '개인화(privatization)'를

촉진하였다. 상업화의 침투에 따라 허번이 발견하였던 공동체적 가치와 네티즌의 공동체적인 영향력은 차츰 약화되고 이를 대신하여 거대 기업과 사업가들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기의 기술유평아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로 흔히 지구촌화(globalization), 권능강화(empowerment), 수평화(decentralization), 민주주의와 조화(democracy and harmony)를 꼽았다(Negroponte, 1995).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국민 국가의 주권을 상당 정도 약화시킨다³⁾. 또한 인터넷이 채택한 상호호환적인 구조와 탈중심적인 구조는 위계화된 조직을 수평화하고 닫힌 체제를 열린 체제로 전환하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인터넷 공간이 갖는 익명성과 탈육체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인터넷의 양방향성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평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결국 민주주의가 확대되리라는 예측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입장이 달라진다(<표1 참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제주의자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세계의 확장으로 본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공간으로 본다. 초기 네티즌들은 미국 수정 헌법 1조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이버스페이스의 완전독립을 주장했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론자들과 초기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분권적인 구조와 열린 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규제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열린 체제의 가능성과 새로운 유평아의 꿈은 현실사회로부터 간섭당하고 저지당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은 사용자들의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지 ‘독립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 권력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세계에 종속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일반화하면 열린 체계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가 갖는 새로운 가능성

3) 전지구화는 1970년대 중후반의 세계경제 위기 이후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한 탈규제,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대 클린턴 정권과 IMF는 강력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밀어붙였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통신기술이 강력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지구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과 이데올로기를 단위 국가 차원에서 생산 관리 통제하던 국민 국가의 힘은 약화된다. 그 대신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식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백옥인, 2002. 참조).

4) 초기 네티즌 사이에서는 기술유평아주의의 낙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와이어드(Wired)지를 통해 전파된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와 네그로폰테(1995)의 디지털 신화가 이런 역할 담당했다.

5)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 자유주의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과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정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중반까지 네트워크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과 장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규제주의자들의 입장과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완전 독립론이나 사이버스페이스 현실 종속론은 둘 다 무리한 주장이다.

현실사회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에 만리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 모두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레식(Lessig, 1999)은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규제될 수 있고,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본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레식의 경고는 주목할 만하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협약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런 제3의 입장을 ‘협약주의(형성주의)’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2) 규제주체와 대상, 방법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누가(규제주체), 무엇(규제대상)을, 왜(규제 이유와 근거), 어떻게(규제 형성과정) 그것을 만드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규제의 주체가 민간인지, 사업자인지, 정부인지에 따라 규제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와 법적 강제에 다른 규제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 규제는 사회 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입과 통제를 위한 법안이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는 가도 밝혀져야 한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용자 개인인지에 따라 법적인 효력과 영향력이 달리 나타난다. 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와 사용자 개인에 대한 직접 규제가 동시에 병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지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규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등급제라는 것이 특정 연령 대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미치는 효력은 단순히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 대상 내용이 주로 ‘불법통신’이나 ‘음란물’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불법통신’이나 ‘음란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와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의 이유나 근거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률안의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전체 사용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부 정보사업체의 이해를 숨기고 있을 경

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규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방식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인터넷은 완성된 창작물들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와는 달리 불완전한 개개인의 생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는 과정적 미디어이다. 따라서 과정 중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 완성된 창작물처럼 규제를 가해서는 곤란하다. 인터넷은 창작물과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트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인터넷을 규제하고 관할하는 주권은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네트를 규제할 법률이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제정 과정이 열려있고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아래부터의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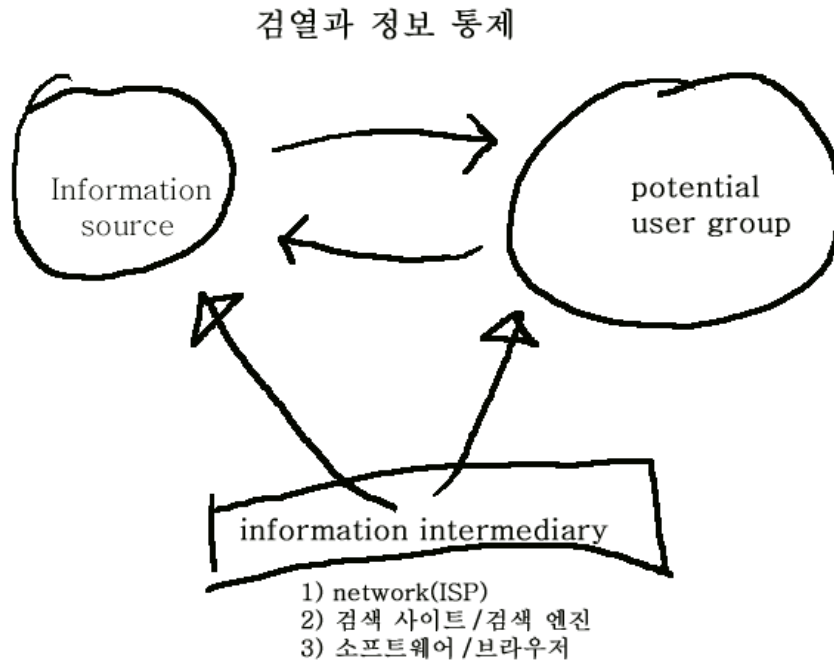
3.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이다(<그림 5> 참조.). 이 경우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정보 차단의 주체는 국가, 시민사회, 가정, 개인 등 다양하다.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통제에는 시민사회와 가정 및 개인에 의한 자율적 정보통제와 국가의 법적 강제를 통한 타율적 규제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정보생산자와 소비자는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사적 부문은 다시 상업적 콘텐츠 사업자, 단체, 개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연령계층이나 성별,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분포를 갖는다. 다른 한편 정보생산자와 사용자는 공간적 입지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진다. 대개 일국적 차원에서의 검열과 통제가 무력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 상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망 공급자가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통제는 법률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들의 자율과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5 > 검열과 통제방식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내용규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사용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평적 협약 과정이 생략된 채로 위로부터 강제되는 법률적 규제는 인터넷의 열린 구조를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에 실리는 내용은 완결적인 결과물도 있지만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쳐지고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내용물에 대해 일방적이고 닫힌 잣대를 적용하여 등급을 매기게 되면 정보의 흐름이 왜곡되고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완성된 고정물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정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네트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의 추세도 중국과 싱가포르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이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 일방적이고 성급한 입법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자율 규제로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 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와 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현행 규제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 검토

1.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근대 인간 사회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원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의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1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표적인 헌법이다.

Bill of Right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대한민국의 헌법도 19-22조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있다. 수많은 네티즌이 인터넷의 기본 철학과 이념으로 ‘제퍼슨의 자유주의’(Jeffersonian Liberalism)를 내세우는 이유는 제퍼슨이 민주주의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네티즌끼리 서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자유로 이어진다. 연대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이어질 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네티즌의 집회와 결사는 현실세계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네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빛의 속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집할 수 있다. 새로운 네트의 힘은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지배하는 힘’(power over others)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생겨나는 힘’(power with others)이다. 이러한 네트의 힘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결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스스로가 쟁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전자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이를 활용한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날로 변창하는 한편 현실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정부 권력은 이에 대한 통제를 모색하게 된다. 각종 규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눈에 보이는 통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감시와 통제 및 규제는 법률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2. 불법통신 규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몇가지 법률들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대표 조항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금지에 관한 조항과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조항(제307, 308, 30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일반 법률 조항들과 더불어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법통신 금지 관련 조항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된 불법통신은 개념이 모호하다. 법률 구성상 광범위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제53조 제2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검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⁶⁾

1960년대에 제정된 ‘불온통신’규정이 아직도 잔존하며 이것이 현재 인터넷 내용물 규제 of 축을 이루고 있다.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⁷⁾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 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다음은 결정문의 일부이다.

6) 한상희,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7)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에 전기통신법 제 5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후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를 결정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된 9가지 항목을 준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불온’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기는 하였지만 인터넷에 대한 국가기구의 검열과 개입의 소지를 더욱 확대해 놓았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고하게 열어놓은 데 문제가 있다. ‘음란한 부호’, ‘허위 사실’, ‘불안감 유발’, ‘국가기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제를 확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현재 사이버스페이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모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조항에 힘입어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불법 유해 정보를 설정하여 심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1995년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당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부당광고, 선거부정, 음란/폭력문자, 음란/폭력음성, 음란/폭력물판매, 음란/폭력물구매, 음란/폭력물교환, 불건전 만남 유도, 불건전 대화, 음란물 소개 안내, 언어 폭력, 매춘, 음란정지영상, 폭력정지영상, 음란동영상, 폭력동영상, 음란게임, 폭력게임, 기타 등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음란, 명예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 관련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⁸⁾

8) 김기봉, 사이버공간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실태 및 대안모색,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 해외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심의 대상 영역도 대단히 광범위하여 문자, 음성, 정지화상, 동영상, 게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전체 미디어 형식을 포괄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법통신물로 심의하는 범주는 크게 음란, 폭력, 사생활침해, 반국가 등의 항목으로도 묶어질 수 있다.

<표2> 유형·형태별 불건전정보의 종류

유형		형태	주요내용
문자	음란	게시글, 소설	살인, 강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폭력		
	반국가	게시글	김일성·김정일 저작물, 노동신문 등
	사생활침해	게시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또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
음성	음란	전화방, 700서비스, 국내·국제 폰팅	불건전 만남 유도, 음란·폭력적 대화
	폭력		
정지화상	음란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포르노그래피, 잔혹사진 등
	폭력		계급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의 사진 등
	반국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지화상 게시
	사생활 침해		
동영상	음란	MPG, MOV, RA 파일 형태의 동영상물	음란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한국인 유학생 포르노
	폭력		실제 또는 실제로 위장된 살인, 강간장면을 찍은 스너프 필름
	반국가		조선중앙방송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사생활 침해		몰래카메라, 셀프 카메라
게임	음란	CD, RPG, Mud 등	퇴폐, 폭력적 내용의 게임
	폭력		
기타	음란	음란, 폭력적 대화, 음란사이트 배너, 음란물 판매 광고	채팅을 통한 음란한 대화 및 만남 주선
	폭력		채팅을 통한 언어 폭력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오용 및 해커에 의한 유출

초고속망 및 컴퓨터 보급률 등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용은 인프라의 발전 속도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세계 사이에 만리장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개입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규제의 범위와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IV.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별 검토

1. 인터넷 등급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정부 행정 기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 제42조는 정보통신부의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차단용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전기통신정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

이 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내용 게시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9월 24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이는 변형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로서 국가 행정 기관이 규제 주체가 되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사업자와 최종 사용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나 등급부여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제는 레식의 분류를 따르자면 코드를 통한 규제와 법률을 통한 규제가 결합된 모습으로서 국가가 코드를 통한 규제를 위로부터 강제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법적 규제가 아키텍처(코드)를 통한 규제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레식의 규제 모형에서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통합 방식에 해당한다. 네트 사용자의 합의와 규범을 통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와는 달리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를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고 코드를 활용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기술적 강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통합형 규제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 등급제로 실현되고 있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에 만리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약주

의에 입각하여 대안적인 규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적인 규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규제의 주체가 될 것인가이다. 현재 국가 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민간 자율 규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민간자율규제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는 단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에 인터넷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2002).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또 다른 규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민간자율규제를 담당할 단체가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민간규제기구가 준관변단체나 규제 관련 기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들은 자율규제의 표준적인 장치로 ‘인터넷 사업자 강령’, ‘자율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 ‘인터넷 핫라인’ 그리고 ‘미디어 교육 및 홍보’ 등을 꼽고 있다(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200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과 개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맥락을 도외시한 감시와 개입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 까도 의문이지만 민간 감시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시민간의 감시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적 감시는 공적 감시보다 더욱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핫라인’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협의와 여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핫라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니는 핫라인이 따로 존재할 경우 그것은 이미 자율적인 규제가 아니다. 인터넷 사업자 강령도 형식만 자율 규제이지 정부 규제의 눈치를 살피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되기 십상이다. 자율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은 스스로 사용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니만큼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장 확실하고 대안적인 규제는 미디어 교육 및 홍보일텐데 이것조차 특정 이데올로기에 따라 왜곡되거나 편향될 소지를 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집단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공정한 교육이란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내용 등급제뿐만 아니라 국내 자율등급표시 유도, 해외 음란·폭력 정보 등의 등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기술이전 및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과 곧바로 만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등급제로 규제하고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러한 내용물을 포함한 사이트를 걸러내고 그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더구나 이런 기관의 행위는 시민사회의 선택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자율등급표시의 실효성은 국내 관련 정보제공자에 대한 통제와 규제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국외의 다양한 사이트들이 국내 특정 기관이 제시하는 등급제 관련 표식을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그 포괄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무수한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 폭력 정보 등의 등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피씨방이나 공공 부문에서 이들 사

이트에 대한 차단을 권장하고 있다. 이 또한 실효성에서 커다란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개인의 피씨나 이틀 금지 데이터베이스로 제한을 걸지 않은 곳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한 임무조차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동 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는 서비스 또한 공연한 국가 재정의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시장이 준정부기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이 필터링할 내용물은 다른 누구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선택하여 걸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이 그러한 자체 검열 기능이나 자기 선택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그런 것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타율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넓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은 공적 공간이자 공동체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싸움과 시비와 심한 욕설과 음란물이 오고간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은 시간에 구속당한다. 어제 일어난 일은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다. 어제 한 욕과 어제 한 싸움 박질은 오늘 구체적인 정보로 남아있지 않다. 현실 사회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냥 묻혀버린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억의 장소이자 저장의 공간이기에 그런 행위와 내용들이 정보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자동 축적이란 성격을 갖는다. 인터넷은 그를 통한 모든 행위의 결과가 고스란히 저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다.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 사회보다 난잡하고 어지러워보이는 이유는 활동 결과물의 자동 저장성 때문이다.

네트는 동시성의 매체인 동시에 비동시성의 매체이다. 채팅과 쪽지는 동시적이지만 게시판에 남긴 글은 비동시적이다. 그것은 글쓰기와 함께 네트에 남아 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속되는 기록물이다. 말처럼 올린 게시판의 글들은 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글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이 네트에 올려진 콘텐츠가 내용 규제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상대에 대한 무례함과 근거없는 이야기와 명예훼손과 욕설과 난잡한 행동이 인터넷에 난무하니까 실명으로 글을 써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청소하자는 발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싸움이 만약 인터넷에서처럼 차곡차곡 싸인다면 모든 국민이 경찰이 되어도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익명성에 기댄 새로운 자기의 표출과 제약받지 않는 발상과 사고의 표현에 힘입은 바 크다. 현실 사회의 수준과 문화의 품위는 많은 부분 사이버스페이스에 반영된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터넷의 오물을 청소하려는 발상은 살아 움직이는 공연장이 아니라 깨끗하지만 죽은 무덤을 만들 우려가 크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쉽게 인터넷 실명제 유혹에 빠진다. 이미 선거 기간에 실명 아닌 익명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금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지지를 밝히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2003년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터넷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하였다.

이 청구서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¹⁰⁾과 관련 제261조(과태료)제1항은 물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255조 제4항이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

10)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성·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시중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공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실명확인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¹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체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11)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참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검열과 통제 관련 기관의 활동과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1995년 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이다. 앞서 살펴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담당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개입의 선봉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 근절 및 건전 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문제로 지적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10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식을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물론 해당 대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군다나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회적 통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신고된 내용을 심의 처리하거나 다른 관련기관으로 이첩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상근 및 재택 인력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이러한 감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 모니터링 요원 ‘사이버 패트롤’ 지원하고 19세이상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방지에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등 이들이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²⁾ 이러한 활동이 갖는 위험은 민간에 의한 민간의 지배가 정부 관련 기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불법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유해 정보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 홍보 문구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의 명목으로 각종 정보가 모니터링 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①제출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통신』을 감시하며, ②그 설립이나 운영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관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그 기준을 벗어난 통신에 대하여는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④정보통신부 장관의 제한명령권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¹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의 검열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나 입증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엄밀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근거로 인터넷 표현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는 국가에 의한 검열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의 <표3><표4>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설립된 1995년부터 2002년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 내용과 처리 결과이다.

1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거 출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한다는 명목 아래 다음과 같은 업무를 그 기구의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인터넷119)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13) 한상희,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표3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심의건수(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료에서 작성)

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심의건수									
	1995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음란	438	906	4272	7821	11831	10958	14508	18941	49482	
명예훼손	7	12	77	179	983	470	112	116	1674	
폭력	1063	3361	4478	2560	4301	3167	1886	1346	695	
사행심	0	0	0	927	513	400	139	422	1073	
사회질서위	524	1376	5189	5608	11967	8473	8547	9807	11846	
비심의	0	0	0	13	12	9	18	1589	14364	
합계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32221	79134	

<표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심의건수 항목별 비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료에서 작성)

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심의건수 항목별 비율(단위 %)									
	1995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음란	22%	16%	30%	46%	40%	47%	58%	59%	63%	
명예훼손	0%	0%	1%	1%	3%	2%	0%	0%	2%	
폭력	52%	59%	32%	15%	15%	13%	7%	4%	1%	
사행심	0%	0%	0%	5%	2%	2%	1%	1%	1%	
사회질서위	26%	24%	37%	33%	40%	36%	34%	30%	15%	
비심의	0%	0%	0%	0%	0%	0%	0%	5%	1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물은 1995년의 2032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무려 79134건에 이른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250건이 넘는 내용물을 심의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이에 대한 내용있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도 의문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심의건수는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음란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2000년 이후 50% 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심의가 199년의 40%를 기록한 후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하지만 이 기구가 심의한 대상이 단순히 청소년 유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의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란물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위반에 대한 내용물도 이 기구가 심의하는 것을 볼 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5>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정보 심의과정을 보여주는 데 자체검색 모니터링과 신고를 받고 있다. 심의대상인지와 위원회상정 및 심의의 복합적인 절차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이들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기구의 활동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존폐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과정 >

심의과정	심의대상인지	위원(회)상정	심 의	결과통보	회신접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자체검색 o Internet119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위원회 o 전문위원회 o 상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결정 ·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관련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조치결과 회신접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심의사안에 따라 각 위원(회)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전문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효율적인 심의 · 심의기준 적용이 명확한 경우 - 전문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심의 · 월1회 개최 -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안 심의 · 분기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정요구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2. 해당정보 삭제 3. 이용정지 4. 이용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당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결정취소 통보 	

다음의 <표6>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영역이다. 3개분과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1분과의 사회질서위반, 2분과는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위반, 3분과는 각종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표3><표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건수 유형별 분포에서 보듯이 사회질서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심의 대상과 심의 진행 방식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표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과별 심의 영역

심의위원회	근거조항과 심의내용
제1분과 전문위원회	-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자살, 살인청부, 폭탄제조, 불법다단계판매, 도박, 폭력조장, 언어폭력, 잔혹·혐오, 사회질서 위반 등의 정보
제2분과 전문위원회	- 성(性) 관련 음란 및 선정적 문자·음성·음향·영상·화상·부호·웹캐스팅, 아동포르노, 청소년 성매매, 매매춘, 음란정보 판매·구매·교환, 청소년유해정보 표시방법 위반 등의 정보
제3분과 전문위원회	- 통신게임,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음란성·폭력성·사행성 관련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

민간단체를 표방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실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하단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⁴⁾ 사업계획 예결산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제출하는 - 곧 인사권과 재정권, 업무 전반의 틀을 정보통신부로 받고 있으므로 이 단체는 정부 단체와 다름없고 따라서 이 단체를 통한 인터넷 정보의 심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무선 인터넷,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52조 2항이다. 동법 52조 2항¹⁵⁾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한 명확하고 제한된 규제의 틀을 과도하

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제20조(사업계획 제출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칙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
4.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15) 전기통신사업법 52조2항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게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권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자의적으로 인터넷에 개입하고 내용물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차단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만들어 차단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을 강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피씨(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¹⁶⁾ 정보통신위원회는 이 법률에 입각하여 차단 목록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차단프로그램의 차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현행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음란’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데 비해 이 법에 따라 배포된 차단 프로그램은 동성애인권운동단체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민간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민간단체가 벌이는 인터넷 불법·청소년유해정보 감시 활동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한글 제공 불법사이트 차단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의 자율규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차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함께하는 ‘e-Clean Korea’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참여를 통하여 의식 변화 및 긍정적 인터넷 문화 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와 함께 ‘e-Clean Korea 2004’ 선포식을 갖고 전국 캠페인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캠페인 활동을 통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확산한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국가기구의 규제가 자율규제라는 허울을 쓰고 가리워지면서 기업 혹은 사업자에 의한 사용자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다.¹⁷⁾

16)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PC방 설치 근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5항이다.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17) 이런 사례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ISP)가 엑스존(동성애자 사이트)을 폐쇄하도록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V.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방향

인터넷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참여자의 접속과 참여에서 출발한다. 인터넷의 주권은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인터넷이 채용한 수평적인 개방구조는 참여자의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을 촉진한다. 인터넷은 새로운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는 권리의 공간이기도 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터넷에서 특정한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인권은 현실사회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선언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그것은 네트 사용자의 결집된 합의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권리이자 힘이다. 막스 베버의 고전적인 권력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다. 이러한 권력 개념은 조직의 위계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조직에서 형식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설정이다. 이런 권력은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이다. 실제적 권력은 지위나 폭력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힘의 행사는 불균등한 관계를 수반하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권력은 '잡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러나 권력의 '출현적'(emergent) 속성에 주목하면 네트에서 생겨나는 과거와는 다른 동적인 '힘'과 '권능 강화'를 설명할 수 있다. 출현적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남을 통한 권력이거나 남과 함께할 때 드러나는 '힘'이다. 출현적 힘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각 사람의 에너지, 자원, 힘, 권력의 동원을 의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터넷은 이런 힘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출현적인 힘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법률적 강제보다 내재적인 합의를 통한 네트의 규제가 보다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를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네트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여(access),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내고, 서로 대화(dialogue)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의 기본 조건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연대는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는 '열린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을 '닫힌 구조'의 수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인류역사상 드물게 찾아온 새로운 자유의 매체

를 통제와 감시와 통제의 손에 내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1. 규제 관련 법률의 폐기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생겨난 매체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는 개인 정보발신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는 사이버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표현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인터넷에서 공동체를 조직하고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가 뒤따라야 한다. 국가권력이나 특정 사회집단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터넷에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온’한 사상과 행동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구체적인 위해를 가져올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침해한다. 음란물 규제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하지만 사실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런 법률 조항은 과감하게 개정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등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킨다면 또 다른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 법률 조항 가운데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개입과 규제도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갖는 매체 특성 상 정부의 개입과 통제로 인터넷의 기강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합의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성급한 입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의에 기반한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등급제 폐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어떤 정부 기구도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감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는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특정 등급의 사이트를 자동 차단하거나 특정 단어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위험이 있다. 자율등급표시에 대한 사후책임이나 그에 따른 감시업무를 정부가 직접 주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일종의 검열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국가기관이 주도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만약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등급자율표시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등급제로 인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으려면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한 자의적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하고 이를 시행하는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를 결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과 그 지시 성격이 분명치 않은 4호¹⁸⁾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인터넷에서의 등급제를 활용한 검열과 규제를 시행하도록 보장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와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형법 243조¹⁹⁾에서는 전달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상기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준에서 사실 상의 사전 검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그 범위가 매우 너무 넓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규제 대상이 그 해석에 따라 분명하지 않고 내용이 포괄적이다. 이들 조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별 심의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개별심의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막연한 사실에 근거한 자의적 심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²¹⁾

18)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19)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동법 제10조 1항4호에 적시된 ‘건전한’, ‘반사회적’, ‘비윤리적’의 기준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오용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크다.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유통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이 사회체제의 편의적 유지를 위해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7조 ‘개별심의기준’ 자항²²⁾도 폐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유무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도 아니고 판단할 능력도 없는 영역이다.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대상 선정과 판별도 개별 위원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대상이 아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대상은 다른 현행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과정의 자의성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가기관의 검열과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흔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OPA를 사례로 든다. COPA와 같은 법률은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COPA에서는 불온 통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포괄적 심의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이미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의 음란물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올리거나 배포 판매하면 형법 제24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굳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법통신 금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음란물은 이미 형법에 의해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CDA나 COPA의 음란물 규제와는 맥락이 다르다. 미국의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를 마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전체 내용물에 대한 심의와 규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들 법률을 인터넷에 대한 특정 기관의 심의와 규제의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²³⁾ 인터넷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인터넷의 민주주의가 자랄 터전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한 제한 사유’를 들고 ‘명확하게 제한 대상’을 적시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누가(규제주체), 무엇(규제대상)을, 왜(규제 이유와 근거), 어떻게(규제

2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2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23) 헌법, 제37조 제2항.

형성과정) 그것을 만드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와 법적 강제에 따른 규제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 규제는 사회 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용자 개인인지에 따라 법적인 효력과 영향력도 달리 나타난다. 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와 사용자 개인에 대한 직접 규제가 동시에 병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를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지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규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에 대한 규제의 한 방식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이미 표현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사후 규제라면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사전에 자기 검열하도록 만드는 사전 규제책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등급제와 더불어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상과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게시판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실제 생활 공간에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고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에 비해 인터넷 글쓰기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혹은 통신실명제는 정보통신부가 1998년 12월 7일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불건전한 통신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학계의 연구 성과물 공유나 자율적인 공동체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뿌리가 약하다. 1995년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인터넷 망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불과 10년 만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상업적인 서비스가 주도한 인터넷 문화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실명제의 도입으로 해결가능하지는 않다.

인터넷은 숨기는 기능보다 드러내는 기능이 우세한 매체이다. 인터넷이 심하게 오염되고 쓰레기로 넘쳐나고 근거없는 비방이 오가고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불온한 정보가 오가는 곳으로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이 갖고있는 자동저장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오가는 육지거리와 거친 행동, 남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에 비하면 인터넷의 폐해는 상대도 안된다. 인터넷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모든 글쓰기 행위를

자동으로 축적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한 말과 행동은 글과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 한 곧바로 없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이 일상의 공간보다 더 불온하게 보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나타나게 된다. 개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음란한 말과 행동을 국가나 정부 기관이 일일이 검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거친 행동은 일상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단 그것이 상대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때 법률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많은 게시글들은 글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에 더 가깝다.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모든 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개개인의 생각과 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근거없는 비방이나 상스러운 말을 줄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를 통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순화 기능을 얻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사전에 검열하고 통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나 조직 게시판에서의 글쓰기가 억압되거나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나 정부기관의 주도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되면 안된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 기관이 주도하거나 강제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단, 인터넷 상의 개별 공동체나 조직이 자체의 합의에 의하여 실명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있다. 게시판 글의 실명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의 사적정보(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한 머지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개인의 주민등록정보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활용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인터넷에서는 육체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권력관계나 지위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현실 사회나 특정 조직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많은 제한이 생긴다. 이것은 생각을 드러냄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현실 사회의 권력관계로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사회의 힘관계를 인터넷에 그대로 연장하는 기반이 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공작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사실 상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관련 제261조(과태료)제1항은 물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255조 제4항이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²⁴⁾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24)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참조

실명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상기 선거법 관련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4. 인터넷 검열 기구의 철폐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내용을 사실상 모니터링하고 심의하고 있다. 정부 산하 단체의 시민사회 검열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 기구는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용 심의가 사후심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기관의 심의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일종의 ‘검열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119라는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정보를 신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 사설 단체나 준국가기관이 특정 정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리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불법정보를 신고받고 신고사항을 일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심의를 대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인터넷119와 자체 모니터링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통로로 작동한다.²⁵⁾

둘째, 이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등급제 실시와 등급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소지 있다. 등급 부여에 대한 자의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적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이 기구가 작성하고 있는 차단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은 국민의 알권리 위축의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제공되는 한글 및 외국어로 된 음란·폭력 정보를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DB를 구축하였다. 2003년 2월 현재 약 15만건에 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내용선별S/W 이용자 및 내용선별S/W 개발업체에 제공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자율규제를 넓혀나간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규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업자와 사용자들의 자율 규제 영역을 넓힌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시민사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감시라는 최악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사업자를 통한 우회적 규제도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25) 안춘수, 인터넷 내용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책임과 자율규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와 정보통신윤리의 방향

<참고문헌>

김기봉, 사이버공간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실태 및 대안모색,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 해외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방석호(1997),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57-87.

백육인(1995),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 {경제와 사회 27호}

백육인(2002), [정보사회와 전지구화 :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비평}, 통권 9호(2002 겨울호)

안춘수, 인터넷 내용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책임과 자율규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와 정보통신윤리의 방향

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2002), 정보통신 정책 자료집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진정한 출발선에서기위해**-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민관 공동규제 구축-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2003),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

한상희,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홍성욱(2002), {네트워크혁명}, 그 열림과 닫힘, 들녘

Barabasi, Albert-Laszlo. (2002) *Linked ; The New Science of Networks*
링크, 김기훈 역, 동아시아

Barbrook, Richard. (2000) "Cyber-Communism : How the Americans are Superseding Capitalism in Cyberspace", *Science as Culture* Vol.9, No.1

Hauben, Michael. (1997) *Netizens : On the History and Impact of Usenet and the Internet* IEEE, Computer Society Press.

Kapor, Mitchell. (1993) "Where Is the Digital Highway Really Heading? -The Case for a Jeffersonian Information Policy", *Wired* 1(3) Jul/Aug. 1993.

Lessig, Lawrence. (1999) *Code*, New York : Basic Books

Lucas, Inirona. (1998) "Shaping the Web: Why the Politics of Search Engines Matters" *The Information Society* Vol.16, No.3

Lyon and Zureik. (1996)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Negroponte, N. (1995) *Being Digital* : knopf

Post, David. (2000) "What Larry Doesn't Get : Code, Law, and Liberty in Cyberspace"
Stanford Law Review Vol.52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 보호

1. 규제 관련 법률의 폐지

1. 필요성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 개정 및 폐지
정부나 행정 기관의 강제적 개입과 규제 철폐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율적인 인터넷 규제 정책 개발
시민사회의 합의에 바탕한 자율적인 규율 형성 지원
음란물규제와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인 제거

2. 추진전략

- 1-1. 국가보안법 폐지
- 1-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폐지
- 1-3.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1-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 1-5. 청소년보호법
-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근거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헌법
미국수정헌법 1조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4.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부

2. 인터넷 등급제 폐지

정부 기관의 주도로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해야 함

1. 필요성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한 자의적인 등급제 폐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등급제 폐지

2. 추진전략

청소년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폐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7조 ‘개별심의기준’ 자항 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폐지

3. 근거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헌법
미국수정헌법 1조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4.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부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서는 안됨

1. 필요성

- 3-1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
- 3-2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 3-3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 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사실상의 실명제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함

2. 추진전략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갖는 문제점 부각

3. 근거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4.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부

4. 검열 관련 기구의 철폐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해체되어야 함

1.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내용을 사실상 모니터링하고 심의함
차단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은 국민의 알권리 위축의 결과로 이어질 우려 있음
정부 산하 단체의 시민사회 검열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됨
등급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소지 있음
자율규제를 넓혀나간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규제에 대두될 소지 있음

2. 추진전략

- 4-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 4-2 순수 민간단체로 청소년유해물 관련 규제 위임
- 4-3 시민사회 자율 규제의 제한

3. 근거

대한민국헌법 19조
대한민국헌법 21조 2항

4.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과제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1.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관련법률 폐지	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1-1.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법무부	
1-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폐지	국회	정보통신부, 법무부	
1-3.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회	정보통신부	
1-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국회	문화부	
1-5. 청소년보호법	국회	문화부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	법무부	
2. 인터넷 등급제 폐지			
2-1 청소년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폐지	국회	문화부	
2-2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7조 '개별심의기준' 자항 폐지	국회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폐지	국회	정보통신부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폐지	국회	정보통신부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포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폐지	국회	헌법재판소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정보통신부, 인권위		
5. 순수 민간단체로 청소년유해물 관련 규제 위임	문화부, 인권위		
5-1 시민사회 자율규제의 제한	인권위		

[부록 2] 정책안 관련 참고 자료
 <자료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심의 내용별 분류표
 (1997-2002)

◆ 기간 : 2002.1.1 ~ 2002.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5,649	2,618	9	61	2,398	150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16	21	17	4	0	0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422	115	58	22	27	8
유언비어	5	0	0	0	0	0
반국가	69	3	0	3	0	0
부당광고	3	2	0	2	0	0
선거부정	812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990	531	315	85	108	23
음란/폭력 음성	5	3	3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383	82	16	23	19	24
음란/폭력물 구매	1	0	0	0	0	0
음란/폭력물 교환	68	49	5	43	1	0
불건전 만남 유도	531	350	155	136	28	31
불건전 대화	659	599	10	559	28	2
음란물 소재 안내	4,531	773	349	289	122	13
언어 폭력	209	77	2	55	19	1
매춘	1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8,792	3,362	1,708	56	2	1,596
폭력 정지영상	59	21	9	3	0	9
음란 동영상	3,872	2,075	1,056	5	1	1,013
폭력 동영상	25	3	1	0	0	2
음란 게임	103	74	34	23	0	17
폭력 게임	58	0	0	0	0	0
기타/분류외	3,269	275	18	65	119	73
비심의 대상	1,589	0	0	0	0	0
계	32,221	11,033	3,765	1,434	2,872	2,962

◆ 기간 : 2001.1.1 ~ 2001.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6,581	6,290	819	254	4,137	1,080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12	18	15	2	0	1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139	34	1	0	32	1
유언비어	30	28	28	0	0	0
반국가	0	0	0	0	0	0
부당광고	1	0	0	0	0	0
선거부정	0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1,299	943	602	232	20	89
음란/폭력 음성	1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633	462	16	50	145	251
음란/폭력물 구매	65	59	11	48	0	0
음란/폭력물 교환	621	594	14	577	3	0
불건전 만남 유도	1,387	1,098	94	230	637	137
불건전 대화	3,503	3,154	6	3,101	46	1
음란물 소재 안내	301	102	27	50	21	4
언어 폭력	420	264	42	219	2	1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5,698	5,051	3,352	250	27	1,422
폭력 정지영상	134	117	80	11	0	26
음란 동영상	1,928	1,761	1,109	62	1	589
폭력 동영상	27	23	8	7	0	8
음란 게임	372	318	127	134	0	57
폭력 게임	5	0	0	0	0	0
기타/분류외	1,935	1,186	734	96	9	347
비심의 대상	18	0	0	0	0	0
계	25,210	21,502	7,085	5,323	5,080	4,014

◆ 기간 : 2000.1.1 - 2000.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5,872	4,822	137	2,270	2,260	155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470	103	73	25	0	5
사형심 조장/피라미드	400	248	2	1	244	1
유언비어	13	7	5	2	0	0
반국가	1	0	0	0	0	0
부당광고	18	4	1	3	0	0
선거부정	703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408	154	75	70	0	9
음란/폭력 음성	0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1,961	1,482	5	96	1,347	34
음란/폭력물 구매	240	178	29	149	0	0
음란/폭력물 교환	371	323	26	143	154	0
불건전 만남 유도	583	179	0	22	152	5
불건전 대화	3,004	1,200	4	1,193	3	0
음란물 소재 안내	624	249	9	99	131	10
언어 폭력	2,657	1,363	72	1,291	0	0
매춘	2	1	0	0	0	1
음란 정지영상	2,153	1,743	1,309	364	21	49
폭력 정지영상	78	57	21	30	5	1
음란 동영상	1,328	1,112	487	261	25	339
폭력 동영상	20	17	6	10	0	1
음란 게임	692	661	592	58	10	1
폭력 게임	4	0	0	0	0	0
기타/분류외	1,866	1,537	100	1,430	6	1
비심의 대상	9	0	0	0	0	0
계	23,477	15,440	2,953	7,517	4,358	612

◆ 기간 : 1999.1.1 - 1999.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10,299	7,958	1,178	4,676	2,078	26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983	110	92	14	4	0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513	346	23	175	147	1
유언비어	34	11	7	4	0	0
반국가	51	0	0	0	0	0
부당광고	57	32	20	12	0	0
선거부정	1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1,772	572	204	282	79	7
음란/폭력 음성	106	6	0	2	1	3
음란/폭력물 판매	3,364	2,923	278	1,255	1,383	7
음란/폭력물 구매	274	194	17	175	2	0
음란/폭력물 교환	228	192	7	61	124	0
불건전 만남 유도	1,859	821	33	375	402	11
불건전 대화	2,079	1,687	35	1,426	225	1
음란물 소재 안내	687	325	69	115	140	1
언어 폭력	2,288	1,505	122	1,353	29	1
매춘	28	16	0	0	9	7
음란 정지영상	2,455	1,328	975	334	19	0
폭력 정지영상	80	51	34	15	2	0
음란 동영상	391	205	152	44	9	0
폭력 동영상	18	15	10	5	0	0
음란 게임	466	434	239	151	44	0
폭력 게임	37	3	1	2	0	0
기타/분류외	1,525	995	69	840	58	28
비심의 대상	12	0	0	0	0	0
계	29,607	19,729	3,565	11,316	4,755	93

◆ 기간 : 1998.1.1 - 1998.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4,012	3,594	1,080	1,522	981	11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79	97	41	40	15	1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927	448	16	300	129	3
유언비어	42	18	11	5	1	1
반국가	13	7	2	3	2	0
부당광고	13	10	8	1	1	0
선거부정	0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124	89	37	40	12	0
음란/폭력 음성	346	178	0	0	145	33
음란/폭력물 판매	4,043	3,768	1,554	1,558	648	8
음란/폭력물 구매	0	0	0	0	0	0
음란/폭력물 교환	0	0	0	0	0	0
불건전 만남 유도	1,114	635	325	276	30	4
불건전 대화	1,169	990	110	416	451	13
음란물 소재 안내	112	76	18	36	22	0
언어 폭력	2,086	1,080	172	759	129	20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1,266	931	659	232	36	4
폭력 정지영상	3	2	1	1	0	0
음란 동영상	55	38	33	4	1	0
폭력 동영상	0	0	0	0	0	0
음란 게임	62	61	24	36	1	0
폭력 게임	1	1	0	1	0	0
기타/분류외	1,528	659	49	310	288	12
비심의 대상	13	0	0	0	0	0
계	17,108	12,682	4,140	5,540	2,892	110

◆ 기간 : 1997.1.1 - 1997.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1,509	1,233	209	807	216	1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77	48	30	15	3	0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0	0	0	0	0	0
유언비어	6	6	3	1	2	0
반국가	0	0	0	0	0	0
부당광고	0	0	0	0	0	0
선거부정	1,826	1	1	0	0	0
음란/폭력 문자	8	8	6	2	0	0
음란/폭력 음성	0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1,942	1,738	423	958	343	14
음란/폭력물 구매	0	0	0	0	0	0
음란/폭력물 교환	0	0	0	0	0	0
불건전 만남 유도	0	0	0	0	0	0
불건전 대화	1,112	711	17	422	271	1
음란물 소재 안내	0	0	0	0	0	0
언어 폭력	4,470	1,476	69	1,152	255	0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1,218	768	324	357	85	2
폭력 정지영상	0	0	0	0	0	0
음란 동영상	0	0	0	0	0	0
폭력 동영상	0	0	0	0	0	0
음란 게임	0	0	0	0	0	0
폭력 게임	0	0	0	0	0	0
기타/분류외	1,848	357	20	300	36	1
비심의 대상	0	0	0	0	0	0
계	14,016	6,346	1,102	4,014	1,211	19

◆ 기간 : 1996.1.1 - 1996.12.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 지
저작권 침해	393	209	1	136	72	0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2	5	0	5	0	0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0	0	0	0	0	0
유언비어	4	0	0	0	0	0
반국가	0	0	0	0	0	0
부당광고	0	0	0	0	0	0
선거부정	0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0	0	0	0	0	0
음란/폭력 음성	0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108	69	1	38	30	0
음란/폭력물 구매	0	0	0	0	0	0
음란/폭력물 교환	0	0	0	0	0	0
불건전 만남 유도	0	0	0	0	0	0
불건전 대화	628	328	2	210	116	0
음란물 소재 안내	0	0	0	0	0	0
언어 폭력	3,361	1,340	16	1,099	225	0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170	118	1	64	53	0
폭력 정지영상	0	0	0	0	0	0
음란 동영상	0	0	0	0	0	0
폭력 동영상	0	0	0	0	0	0
음란 게임	0	0	0	0	0	0
폭력 게임	0	0	0	0	0	0
기타/분류외	979	68	0	60	8	0
비심의 대상	0	0	0	0	0	0
계	5,655	2,137	21	1,612	504	0

◆ 기간 : 1995. 1. 1 - 1995. 12. 31 ◆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저작권 침해	96	44	1	22	21	0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7	1	0	0	1	0
사형심조장/피라미드	0	0	0	0	0	0
유언비어	0	0	0	0	0	0
반국가	0	0	0	0	0	0
부당광고	0	0	0	0	0	0
선거부정	0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1	0	0	0	0	0
음란/폭력 음성	0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78	42	2	20	20	0
음란/폭력물 구매	0	0	0	0	0	0
음란/폭력물 교환	0	0	0	0	0	0
불건전 만남 유도	0	0	0	0	0	0
불건전 대화	255	115	0	33	82	0
음란물 소재 안내	0	0	0	0	0	0
언어 폭력	1,062	303	4	237	62	0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105	59	0	29	30	0
폭력 정지영상	0	0	0	0	0	0
음란 동영상	0	0	0	0	0	0
폭력 동영상	0	0	0	0	0	0
음란 게임	0	0	0	0	0	0
폭력 게임	0	0	0	0	0	0
기타/분류외	428	34	0	31	3	0
비심의 대상	0	0	0	0	0	0
계	2,032	598	7	372	219	0

<자료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6호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제공자등"이라 함은 정보제공자 및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 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비밀보호의 원칙
-

제2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4조 (심의의 범위) 위원회는 정보내용이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조 (심의의 개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 정보제공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제6조 (전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위원장은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해당없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3.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기타 필요한 결정

제8조 (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정보제공자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심의의 중지) ①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정보제공자들이 문서로써 심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중지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정보제공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시정요구

제12조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14조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정보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자들은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들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

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자문의견 제시 등

제17조 (정보제공자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 ①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의견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심의기준

제18조 (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19조 (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을 위협·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4.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제20조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 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정보
2.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정보
3. 범죄를 예비하거나 교사·방조하거나 선전·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4. 기타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정보

제21조 (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나. 존속, 노인, 스승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본인(本人), 아동, 부녀,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마. 낙태, 절개·절단, 수술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출산상황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사. 욕설,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아. 기타 육체적·정신적 고통, 살상, 사체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다.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라.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사.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5. 기타 패륜적·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22조 (광고 · 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 (비밀보호) 위원회는 심의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자료제출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6조 (심의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 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7. 13)

이 규정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29)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의 구분)

위원회는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음성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음성저장장치 등을 통하여 음성을 저장·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2. '비음성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음성정보를 제외한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약식심의 대상정보)

심의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한 약식심의 대상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지, 일간지, 전문지, 스포츠지, 지역신문 등 뉴스정보
2. 의학, 증권, 부동산, 경제, 기업, 세무, 법률, 무역 등에 대한 전문정보
3. 취업, 교육, 진학, 도서, 교통, 날씨, 쇼핑, 물가, 매매 등에 대한 안내정보
4. 문화, 방송, 교양, 식생활, 취미, 여행 등에 대한 생활정보
5. 퀴즈, 퍼즐, 운세, 노래방, 게임, 심리 테스트 등 오락정보

제4조(심의신청 서류)

① 심의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정보의 내용을 심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비음성정보인 경우의 서류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음성정보인 경우
가. 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부
나. 정보내용설명서(별지제2호서식) 2부
다. 정보내용의 검증을 위한 보충서류(별표1)

2. 비음성정보인 경우

- 가. 심의신청서
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정보내용

② 신청인은 제1항 제2호 가목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또는 전자메일 주소
2. 정보내용에 대한 개요, 형태 및 정보제공처

③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1항 각호의 제출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심의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와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각 이용계약별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만18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정지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1회 이용정지시 1개월 이내
2. 2회 이용정지시 2개월 이내
3. 3회 이용정지시 6개월 이내

제6조(이용자 불만사항에 관한 처리 절차)

① 심의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이용제한과 관련한 불만사항의 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이용제한 내용, 불만사항, 사유 및 관련자료
3. 요청인의 요구사항

② 위원장은 불만처리 요청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1. 요청사유의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3. 제1항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세,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엀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1998. 3. 2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음성정보심의세칙과 비음성정보심의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1998. 9. 7)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4>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Ver 1.0

최초 작성일 : 2003년 5월

서명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원민예총 / 노동자뉴스제작단 / 문화연대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보공유연대 I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기독교네트워크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이 선언문은 2003년 5월 10일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통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이 선언문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비판에 열려있으며,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1. 정보사회의 비전(Vision)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간 계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계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II. 원칙

가. 인권의 보장

1. 인권의 보장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비정규·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표현의 자유

3.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4.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5.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리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6.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9. 정보통신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공 접근’(Public Access)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10. 정부는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TV, 라디오, 영상 등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의 기술적 갱신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새롭게 규정되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TV를 도입할 때, 공공적 성격의 채널이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보편적 서비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의 확대는 공정한 시장 경쟁과, 공공성 및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인프라의 구축이 자유 시장에만 의존하거나, 시장 경쟁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방식, 예를 들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감시 하에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관에 의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13.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중고 컴퓨터 등을 제3세계로 이전할 경우, 전자 폐기물이 제3세계의 환경 문제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환경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화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14.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보호

정보통신기술은 환경보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술 등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라.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15. 정보 격차의 해소가 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격차’가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 내의 성적,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의한 정보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6. ‘정보 격차’의 해소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콘텐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17. 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8.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활용 능력이 비례되지 않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개념에 입각한 정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9.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모든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접근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비에서의 물리적 장애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정보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뇌병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 사회적 약자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정보화의 지구적 확산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진단과 공동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2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정보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 공공정보(Public Domain)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여기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학문적 연구 및 공공 기관의 연구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및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그 자체가 주요한 공공정보일 뿐 아니라 공공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23.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현재 추세는 세계인권선언 27조 1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권리(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공정 사용(Fair Use)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개인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각 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제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은 현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24.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25. 프라이버시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기업의 감시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단결할 권리, 감시 행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 재구축,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들의 기술적·지적 능력 계발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6. 익명의 권리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소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익명 혹은 실명 정책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고양하고, 익명을 이용한 악의적인 표현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한 공공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정보를 감시(수집/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은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성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 상관없이 모든 감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제도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제도에 대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28.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 국가와 시장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① 감시 주체와 감시대상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감시대상자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참가를 통해 자기 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가 감시 대상의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면서 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한, 감시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④ 감시대상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를 행하는 권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한다.

29. UN 인권선언 12조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 보안 (Security)

30.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국가 공공부문의 보안조치를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부와 시민사회의 보안문제에 대한 의식고양, 보안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통 촉진, 연구 및 개발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 자율적인 보안질서의 수립, 민관 협력적인 보안조치의 모델 개발에 힘써야 한다.

31. 보안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개개인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법제도와 절차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32. 사이버 범죄행위의 경우, 의도성과 물리적인 피해수준의 판단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아.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3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체가 전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해당 공동체로 이월하는 등, 정치 권력 자체의 분산이 필수적이다.

34. 정보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35.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6. 전자정부(e-government)는 단지 비용의 절감과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는 전자정부의 구축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7. 시장 환경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공개 소스(Open Source) 및 공개 표준(Open Standard)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기업들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8. 개방적 표준

기술 표준은 특정 업체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되며, 형성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 참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39.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기술 개발 및 산업 촉진 정책과 공공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정보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교육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한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는 특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적인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40.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적인 정책, 문화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시민사회는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권력의 독단과 시장의 이해 관계로부터 공공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41. 인간은 단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역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며,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2. 정보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활용, 교육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공적 교육 및 사회인에 대한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3.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 현장의 운영 자체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44.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카.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45. 문화는 공공성, 다양성에 기반하고,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 개발, 창조성, 사회적 지원, 다양성과 차이, 사용과 향유의 관점에서 접근

하여야 한다.

46. 문화는 해당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별 문화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한 삶의 질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콘텐츠를 존중하고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개별 공동체, 특히 소수 그룹의 문화를 존중, 지원해야 한다.

47.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48.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며 결코 단순한 상품으로 제한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들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삶의 다양성을 진체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는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49. 인터넷 상의 콘텐츠의 다양성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되,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특정한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정확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신뢰성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타.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50.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 작업장 내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게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51. 노동 감시의 금지

-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도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회사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장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노동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52. 노동자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이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53. 정보 사회의 국제적인 질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선진국의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III. 실천 지침

가. 표현의 자유

1. 정부의 검열 금지

- 정부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하는 국가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인터넷 콘텐츠는 법률로 명확하고 최소한도로 규정해야 한다.
-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사법제도의 공정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시민 사회와 이용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접근 금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감시의 금지

- 익명의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 실명제나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인터넷의 표현을 감시하는 법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린다.
-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숙하게 표현하는 교육이 공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4.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간망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의해, 회선 공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5.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 : 정부는 지역 주민이 쉽고,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적 접속점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 기관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적인 전용 멀티미디어 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제한 없이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선 환경의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6. 정보통신기술은 환경의 오염이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에 활용될 수 있다.

7. 국제협력과 환경정보의 확대와 분산 (expansion and dispersion)

-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에 대한 올바른 환경 정보의 제공은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핵산업과 같은 에너지정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험, 기술, 정보가 지구적으로 확대, 분산되어야 한다.
- 각 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환경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각 국의 환경사안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8. 전자폐기물 관리 (ICT Waste Treatment)

-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산에서 처리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 환경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과정에 있어서 환경측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9. 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과거 제품과 하위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10. 업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종이 되더라도, 기존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보장해야 한다.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11.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법적 강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개정하고, 각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2.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13.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시각장애

: 하드웨어 - 음성합성장치, 점자프린터, 무지점자기, CCTV

: 소프트웨어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 음성출력프로그램

② 청각장애

: 의사소통분야 - 특수전화, 수화통역, 자막방송, 텍스트 기반의 문자통신, 보청기 등

: 소프트웨어 - 음성↔문자 및 수화 통역 프로그램

③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장비 등 물리적 공간의 장벽 해소 - 전자도서관 확대 및 간편한 이용 보장

: 하드웨어 -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입출력장치의 개발(안경마우스

등)

: 소프트웨어 - 뇌병변장애의 언어장애를 보조해 줄 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보장

14.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하되, 이것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15.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겪게 되는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향 및 대안도 장애인 당사자가 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한 국제적 차원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16. 정부는 공공정보(Public Domain)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17.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18.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을 비롯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 특정 벤더에의 종속 탈피, 정보의 보안, 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오픈 액세스 (Open Access)

- 비상업적 오픈 액세스 저널과 도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액세스 저널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에 대한 검색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Open Access Archive)를 활성화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관련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22.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23. 인터넷 도메인은 단지 '상표'의 다른 형태가 아니며,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이러한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24.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5.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

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등 제 3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법적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주체가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27.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 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읽을 권리(원격 전송에 의한 화면 현시 및 출력)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8. 저작재산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제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공공 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9.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0.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3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권리의 보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설정됨으로써, 각 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높여야 한다. 각 국에 지나치게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은 각 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은 자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하는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2.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33.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의 실현과 권리자의 사적 이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각 국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존속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약은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34.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타 문화, 예술의 창작물과 다른 특성(기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사용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점, 빠른 기술 발전에 의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공공에 환원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다른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되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보호 기간이 현실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35.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36.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7.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38.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감시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9.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40.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허,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41.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2.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공유 항목 / 공유 대상 / 공유 목적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43. 감시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 대상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4.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구축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시행이전과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감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상쇄효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5.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인 구축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통합운영 되어서는 안된다.

46. 분산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위적인 전 국민 단일고유식별자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47. 유전자 정보·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옵트-인(Opt-in)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48. 학교와 직장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49.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사례를 관찰, 감독하며, 개인, 집단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50.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의견제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51.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감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52.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감시를 포함하여,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시 행위에 대해 조직 성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53. 주요 정보화 관련 활동의 계획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실시 권한을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정부의 구축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54. 중앙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들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지방 사무로 이전시켜야 한다.

55. 국제 협력

- UN은 미국의 SEVIS(Students and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와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각 국의 법제 및 계획들을 조사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은 각 국가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하여, 미국의 국토안보법과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관행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에셜론 및 각 국가 정보기관의 첩보 행위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통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바. 보안 (Security)

56. 정부는 보안인증제와 같은 형식적이고 규제적인 제도보다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보안 침해수준 평가 공시제, 부가서비스 및 관련업체별 보안사고 공시제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수준향상이 시장의 경쟁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7.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되는 로그기록의 백업보존기한 제한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및 투자,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 문제들이 얽혀 있으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좋은 관행(best practice)의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루트 서버 및 그 복사본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관리 운영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간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리가 없다.

60.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보안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61. 정부의 법·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채택 여부 및 근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62.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공공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3.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용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65.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 의료, 교육, 운전면허 등 대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6.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의적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67. 현재 정부의 운영방식 위에 전자적인 문서처리의 형식만 덧씌우는 것이 전자정부일 수는 없다. 전자정부는 민주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며, 구축 과정에서 전자화에 의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아.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68.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단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정보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등이 정규 교육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9.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내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70. 학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용도로 공개/자유 소프트웨어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71. 학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망의 공급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2.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인, 특히 주부, 노인, 실업자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역시 단지 정보상품의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정보 사회의 이해와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73. 자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국은 자국의 문화 정책과 협력 기구들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소수문화·지역문화 등 로컬(local) 콘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여러 정보 콘텐츠의 창조화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74. 정보사회에서 각 정부는 언어 다양성의 철학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언어 편중 현상 및 언어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병용 정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및 대표 기관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정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 국가는 다른 언어로 된 자원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 번역도구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표준문자표 및 언어코드, 사전, 일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지방의 언어로 된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오디오 지원을 통해 비문자(non-written) 언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75. 공공자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6.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스미디어 서비스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민주적 대화, 미디어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내용과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정부는 정보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매스 미디어 서비스는 복수의 미디어가 지원되어야 한다.

77.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78. 독립 미디어센터, 공공 채널(위성채널, 공중파, 케이블 전파 및 주파수) 등 노동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79. 노동자는 서로간의 소통이나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으로 회사 내 인트라넷을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가 있다.

80. 여성·이주·장애·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가 인터넷 상에서 성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81.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접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운영원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조직 내 비판에 열려있는 동시에,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2. 노동 감시의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단체 협약에 반영한다.
-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 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

<자료5>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03년 3월31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는 하나의 게시판이나 하나의 커뮤니티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대한 혼한 착각 중 하나는 인터넷이 익명이라는 것이다. 전자 네트워크는 너무나 투명해서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행위의 흔적이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남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기에 더하여 보다 ‘손쉽게’ 추적하겠다는 발상이자,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온라인에서 위법적 행위가 저질러지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실제로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인신구속을 당하고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는 네티즌도 있어 경찰 당국을 골치아프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거리를 다니는 모든 국민에게 명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죤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실명제 주장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요, 검열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 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가장 큰 내심은 글쓰는 사람을 주춤하게 하고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데 있을 것이다. 보기 싫은 글은 일체 보지 않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내용의 글만을 언론이 걸러 내보내주었던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내심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본래 소란한 것이다. 오랫동안 입막음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로 인하여 이제 막 과분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참이다.

왜 익명이면 안되는가?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거이며 때로는 심각한 폭력이다. 정보통신부는 '고발 게시판'에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인터넷의 모든 게시판을 '고발'과 '비고발'로 줄세우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모든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디를 발급했던 PC통신 시대에도 게시판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었다. 폭력은 익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경찰을 세워두고 국민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경찰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가? 이 정부가 참여 정부를 표방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할 노력을 보다 다른 곳에 들여야 할 것이다.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인권 존중은 아직도 우리에게 멀고도 낮은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찰을 달게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성숙한 토론 문화는 커녕 모든 국민이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독재 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망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손쉬운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야말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아무말 없이 듣고 있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히 어이가 없다. 그에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네티즌의 열망은 선거 필승 전략일 뿐이었다는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감시 그 자체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힘이다. 그것이 비록 소란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

<자료6>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별지1 기재와 같음
대리인 별지2 기재와 같음

청구 취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의 원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

청구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중 장창원, 조○연, 강○식, 김○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 (Netizen)²⁶⁾이

26)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Citizen)의 합성어로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가상사회(cyber space)의 구성원이란 의미를 지닌 조어. 인터넷의 보급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빛의 속도로 이어주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신문·잡지 등의 활자매체, 라디오·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의 뒤를 잇는 제3의 미디어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산업사회는 도시노동자인 시민을 창출했으나,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기실현욕구를 펼쳐가는 네티즌군(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네티즌은 종래의 시민과는 뚜렷이 다른 형질을 지니며, 퍼스널컴퓨터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에 일상생활을 소비한다. 앞으로 기존 산업사회의 양상을 바꾸어갈 견인차가 될지도 모른다.

<http://kr.encycl.yahoo.com/enc/info.html?key=1207700&q=네티즌>

고, 이창호, 윤원석은 인터넷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입니다.

2004. 3. 12. 공포·발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255조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1조(과태료)

①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인터넷 실명제’라고 합니다)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제82조의 6, 제261조 제1항의 위헌성

가. 기본권 침해

(1)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헌재 1992. 6. 26. 90헌가23)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곳곳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

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사전검열금지, 알 권리 등으로 구체화되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

익명표현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소중한 가치였고, 익명표현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시민의 상당부분을 의사표현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데 본질적 문제가 있다 할 것인바,²⁷⁾ 이는 바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익명표현은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진 편견에 맞서 사회를 향해 발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다수의 의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소수의 문제제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의 제도나 질서에 의문을 갖게 만듦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은 사회의 변화에 조용하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힘과 편견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발표되어 사상의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데 익명표현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익명표현은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발언은 발언의 내용보다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의미가 해석되기 쉬운데, 이 경우 익명표현은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익명표현은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은 익명표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정한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내부자에 의한 고발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데 기여했고, 익명의 제보는 역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 나아가 프랑스 혁명 등 근대혁명을 태동케 한 역사적인 글인 토마스 페인의 ‘상식(Commons)’은 한 ‘영국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를 바꾼 수많은 글들이 익명표현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익명표현물은 규제되어야 할 비겁한 글쓰기가 아니라, 옹호되어야 할 민주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당부분을 의사표현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다수의 횡포’입니다.²⁸⁾ 아무리 떳떳한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권력관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27)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논문 참조

28)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논문 참조

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²⁹⁾

(다) 선거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장 고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장 고도로 보장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선거시기에 보장되는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그야말로 모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분출하는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풍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에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된 비밀투표의 원칙은 바로 이런 선거시기의 익명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선거시기에 있어 익명에 의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라)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익명표현

청구인들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³⁰⁾을 통하여 전자 우편, 뉴스·정보검색, 인터넷 대화와 토론, 전자 게시판,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풍부한 자원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사용자

29) 이시원·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여름 p205~229

30) 지구 전역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통일된 프로토콜을 사용해 자유롭게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계 최대 통신망. 1969년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된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네트가 모체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서로 접속하는 기술, 또는 그 기술에 의해 접속된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즉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셈이다. 네트워크가 전세계에 보급되면서, 현재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취급되는 모든 정보가 수치로 나타내어진다는 점이다(디지털화). 문자·음성·화상·동화상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동일한 형식으로 취급됨으로써 단일 네트워크(인터넷)상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와 다른 점은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연구를 위한 실험이 항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된 기능은 자유로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터넷은 최신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해나가는 네트워크이다.

<http://kr.encycl.yahoo.com/enc/info.html?key=1733340&q=인터넷>

들이 서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는 바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³¹⁾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인터넷에 대해서는 과도한 통제보다는 자율을,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 사전검열금지 위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여도 정신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 헌재 1996. 10. 4. 93헌가13)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계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확인되어야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견과 정보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억제하여 개인의 정신세계를 감시하고 여론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사전에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전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중 제82조의 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에게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제3항, 제4항은 이러한 실명확인을 해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신용정보업자에게 실명확인을 해줄 지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요청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특정 인터넷언론사에게만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임과 동시에, 특정 인터넷언론사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사전검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알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알 권리'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의 형성과 전개, 행복추구의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선거나 국민투표, 여론형성과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참정권행사의 전제조건이며 이면이라 할 것입니다.³²⁾

알 권리는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으

31) '정치관계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참조

32) 강원택, 「인터넷과 정치과정」 논문 참조

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를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지득하고 있는 선거, 후보, 정당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또한 청구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알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견표명, 정보교환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언론매체 및 기자인 청구인들은 취재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방해받게 되고, 네티즌인 청구인들은 정보수집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명백히 청구인들의 알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방해받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헌법 제17조)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바, 사적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즉,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³³⁾

또한 자기정보의 관리·통제는 자기정보의 자의적 수집의 배제, 자기정보의 무단이용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입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의 남용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자(unique identity)입니다. 이 유일한 식별자는 개인정보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개인정보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아예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자(이를 ‘National I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의 창설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의무적인 전국민 고유식별자를 두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식별번호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에 유일한 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 주체와 목적을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통합될 수 있으며, 시기를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도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통합되기

33) 이은우,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논문 참조

나 누적될 경우에는 애초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인터넷 이용현황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누적되어 공개될 경우, 질병정보와 신용카드 이용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그 결과는 해당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권의 침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전국민 고유식별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가중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남용이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약 65% 가량 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통한 각종 범죄 및 사고의 발생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시판 실명제 역시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부추길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수집될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전송(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운영자의 컴퓨터로의 개인정보의 전송)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처리되어 안전하게 전송되어야 할 것이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인터넷언론사'라는 곳이 모두 엄격하게 개인정보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 평등권 침해(헌법 제10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과 사설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을 전제로 의견제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바, 이는 대부분의 신용정보업체들이 신용거래가 있는 국민을 중심으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또한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즉각적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청구인 김○인과 같은 19세 이하의 청소년,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서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청구인 강○식과 같은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청구인 강○식의 경우 (주)한국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namecheck.co.kr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언론사와 정당 등의 홈페이지 모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유감없이 표현되어야 하는 정치적 공론의 장이자 여론형성의 공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인터넷언론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언론의 자유의 침해

(가) 언론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2. 6. 26. 90헌가23 등). 물론 언론의 자유도 공동체의 존재와 질서를 위하여 다른 사회의 제 법익과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자유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보장, ‘의사형성발표·정보수집전달·여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을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검열하는 것, 정보수집과 전달, 여론형성, 의사형성발표의 과정을 간섭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라고 보았습니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나)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

전통적인 종이신문, 소위 오프라인 언론에서도 독자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면이 개방됩니다. 이런 독자 참여는 언론의 여론수렴 기능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언론의 경우에는 실시간의 쌍방향적인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의 참여공간은 훨씬 더 넓고 역동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소위 ‘뉴스 게릴라들이 만드는 언론’, ‘독립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뉴스의 수용자들이 직접 뉴스의 생산자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언론이 등장하여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언론은 언론기관이 빠지기 쉬운 권력유착이나 기업유착에서 벗어나 언론이 진정한 언론기관으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블로그’도 인터넷언론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개인들이 웹사이트를 열어 글을 올리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답글을 달고, 평을 하고, 인용을 하면서 인터넷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를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블로그를 개설한 개인들은 하나의 작은 언론기관이며, 게시판은 쌍방향의 지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통제는 언론자유 본질적 침해

어느 모로 보나 토론공간을 열고,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은 언론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침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입니다.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려 하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릴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언론기관에 실명확인을 강요하고, 나아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직업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바,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 및 인격과 개성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의 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 직업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공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실명확인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백만명까지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의 입장으로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행복추구권 침해(헌법 제10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인터넷 실명제는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나. 기본권제한의 원칙 위배

(1) 명확성의 원칙 위반(헌법 제37조 제2항)

(가) ‘인터넷언론사’라는 규정의 모호함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률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 5항은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여(이 정의에 따를 경우 언론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나 의견교환을 위해서 소위 블로그라고 불리는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모두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청구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선거관련’이라는 규정의 모호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을 보고 언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해야 할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선거에 관한 의견’이란 표현부터가 모호하기 그지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표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의견’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종류도 많고, 범위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이나 대화방의 이름을 ‘선거관련 의견게시판’이라고 붙이고, 선거관련 의견을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만 게시판 실명제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판 실명제를 하지 않으려면 ‘선거에 관한 의견을 남기지 마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의견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이용자들이 와서 선거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있는 보궐선거 때마다 게시판 실명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헌법 제37조 제2항)

(가) 수단의 적합성 원칙 위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목적은 인터넷 선거게시판을 통하여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의 게시와 유통이라는 부작용을 막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허위정보나 근거없는 비방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첫째,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악의적인 허위정보나 근거없는 비방의 억제와 행위자의 색출일텐데, 형사처벌에 처해질 정도의 허위정보나 악의적인 비방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가지고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의 억압이나 진압의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게시판 실명제는 이런 경우에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건전한 비판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억제하는 부작용은 큰 반면에 악의적인 범죄를 막거나 적발하는 데는 무력합니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언론사는 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데 반하여 정작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만 그 언론사에 의견을 게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나) 필요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배

오히려 게시판을 통한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비방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게시판 실명제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일 것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4 제3항부터 6항까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권을 신설하고, 거부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³⁴⁾ 둘째, 인터넷상에서의 흑색비방과 허위날조, 명예훼손 등은 현행 법체계에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억제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안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게시판 실명제는 불필요한 방안이며, 부적절한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IP주소의 추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네티즌들은 IP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바, 최근 사이버수사기관은 전국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최근 인터넷매체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건전한 게시판·대화방 이용을 위하여 회원제, 회원간 모니터링 및 신고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게시물로 신고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요청을 위한 핫라인시스템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 실명제는 필요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4)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터넷 상에서 선거시기에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비방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를 막는 수단은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 실명제는 적용 대상도 ‘인터넷언론사’, ‘선거에 관한 의견’ 등 모호하기 그지 없고 시기의 제한도 없이 광범위한데다가, 그 방법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시스템은 막대한 설치·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에는 익명 표현이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가장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선거시기에 토론과 비판의 싹을 자를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우려로 표현할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흑색비방, 허위날조 예방 등의 공적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 국민주권원리의 침해, 민주적 기본제도인 선거제도의 형해화, 평등의 원칙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원칙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언론의 자유의 침해, 직업의 자유의 침해 등 침해되는 사적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및 신체적 자유권과 같이 기본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제한입법은 엄격하게 심사·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절차,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이란 헌법 내지 헌법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다. 외국의 사례

(1) 유럽

유럽의회를 비롯한 유럽각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³⁵⁾

35) *유럽의회 정보보호분과, 「인터넷 프라이버시 - 온라인 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의 통합적 접근」 (Privacy on the internet - An integrated EU approach to online data protection, 5063/00/EN/FINAL) 보고서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0/wp37en.pdf

(2) 미국

미연방대법원은 이미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 미국의 조지아주는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을 금하는 법률(‘인터넷 사찰법’,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가 연방지방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후 폐기한 바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주 법원에서는 선거시기에 익명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01. 7.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익명의 인터넷 표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³⁶⁾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법원은 선거 팸플릿에 실명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³⁷⁾

3. 이 사건 법률조항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36) 이인호, 「익명표현의 자유」 논문 참조

* 2002. 4. 콜로라도 대법원은 소비자의 도서구입기록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익명성의 권리 지지.
<http://www.cobar.org/opinions/opinion.cfm?OpinionID=560>

* 2001. 7. 뉴저지 항소법원은 익명을 통한 온라인 의사표현의 권리 인정.
<http://lists.insecure.org/lists/politech/2001/Jul/0046.html>

* 2003. 1. 미국 기업(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과 그 모기업은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을 포기함.
<http://www.citizen.org/pressroom/release.cfm?ID=1293>

* 1999년 펜실베이니아 상급법원은 익명의 게시글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ISP에게 익명의 게시자의 신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할 수 없다고 판결.

37) TALLEY v. CALIFORNI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62 U.S. 60.

US Supreme Court, cert to Supreme Court of Ohio, No. 93-986, 1995

이 사건 법률조항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는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익명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위헌입니다.

선거운동은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듯이 익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스팸메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수신거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을 발신한 발신자의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에 표시되기만 하면 족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정보의 전송 방지라는 목적도 전자우편 주소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입니다.

4. 심판청구의 요건 준수 여부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가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되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절차가 없거나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경우 및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고(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위 기본권이 현재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령 헌법소원은 이를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이 없어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며,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했으므로 모든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인터넷실명제는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고,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형해화시키고, 19세 이하인 청소년이나 주민등록 말소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고,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를 저해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우리 국민은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슬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과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수많은 악법과 법의 악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압제와 기만의 시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한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재정권하에서의 생존방식이던 침묵과 자포자기 성향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의 저변에 자리잡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무원이 될 자, 군인, 교사 등 정부 및 공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감히 자신의 신변과 진로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과 의견개진을 할 용기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개성신장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은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굴리는 것이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전검열인 인터넷실명제에 의해 절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참 고 자 료

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 성명서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기자회견문
4.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회견문
5.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킹센터 논평
6.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련 칼럼
8. 보도자료
9. 국내 논문
 - 가.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 나. 이시원·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 다. 강원택, 「인터넷과 정치과정」
 - 라. 이은우,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마. 이인호, 「익명표현의 자유」
10. 외국 보고서

가. 「인터넷 프라이버시 - 온라인 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의 통합적 접근」
(Privacy on the internet - An intergated EU approach to online data protection,
5063/00/EN/FINAL) 보고서

나.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 regulatory responses)

11. 해외 사례

12. 외국의 판례

가.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례

나. 미국 뉴저지주 항소법원 판례

다. 기사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 주민등록등본

2004. 3. .

위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담당변호사 김 훈 희

2.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 은 우

3.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 석 연

4.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선 수

5.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 인 회

6.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7.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 유 정

헌법재판소 귀중
별지 1

청 구 인

1. 이 창 호(인터넷신문협회장)
2. 윤 원 석(인터넷기자협회장)
3. 장 창 원(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4. 조 ○ 연(주부)
5. 강 ○ 식(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는 네티즌)
6. 김 ○ 인(청소년)

별지 2

대 리 인

1.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10호
담당변호사 김 칠 준, 김 춘 희
2. 법무법인 지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0층
담당변호사 이 은 우
3. 법무법인 명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김 석 연
4. 여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대영빌딩 203호
변호사 김 선 수
5. 법무법인 길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6층
담당변호사 김 인 회
6. 법무법인 한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6, 8층
담당변호사 이 상 희
7. 법무법인 자하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2층
담당변호사 이 유 정

<자료7> 인터넷 검열 반대 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03년 7월24일

정부와 언론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라

7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지난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으켰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사회단체 일동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은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용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색만 하면 북한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북한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로또복권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한해에도 수백명씩 북한을 오가는 시대에 이러한 구시대적인 인터넷 공안탄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두고 이미 여러 이용자들이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단체는 검열과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만이 올바른 정보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작년의 붉은 악마 응원과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해 온갖 형용사를 끌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채 컷전을 떠나기도 전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네티즌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제 사회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코메디 같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위헌적인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5개 사회단체는 네티즌의 자유로

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한다.

- 인터넷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료8>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 반대 성명서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개정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관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만큼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될 당시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고,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관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감히 밝힌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지나친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할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내용규제 영역에서 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대목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을 중지시키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7대 국회는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4년 5월 10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9> 부정선거 규제 반대 및 표현의 자유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 작품을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조사하는가 하면 23일 급기야 권모씨를 '긴급' 체포하여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가 된 정치 패러디 작품의 대개는 기존의 영화나 게임에 빗대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들이다. 최근 탄핵 사태와 관련한 작품들을 연달아 문제삼는 것은, 선거시기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공정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표현의 자유이다. 우리 선거법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그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제1조) 따라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단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제58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혹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거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국민은 정치인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주 법원에서는 선거시기에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터넷이 비방을 조장한다는 항간의 우려 역시 근거 없다. 분명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언론 매체에 국한되었던 발언권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비로소 국민 일반에게도 주어진 것은 오히려 불균형의 시정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과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한 결정문에서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법원의 판결 또한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총선 때 비방죄로 기소되었던 김모씨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현행 선거법 상 '비방'의 개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5년에도 법원은 선거시기 표현의 수위는 평소보다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거법을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자동검색 시스템'이란 기계를 동원한 무작위 적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떤 표현의 위법성 여부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데 기계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선관위는 자동검색시스템 도입 후 12월에 보도자료를 내어 매일 평균 11만 여건을 적발하고 이것을 다시 사람이 최종 검증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도입했다는 이 기계가 사람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선거법에서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위험한 적발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선거법이나 헌법은 모든 정치적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삭제요청을 남발하고 경찰이 네티즌을 체포하는 것은 우리 선거법이 허용하는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특히 인터넷을 다른 일방향적 선거운동 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자유로이 발언하는 것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운동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인터넷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적 선거의 한 요소이다!

2004년 3월 30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단병호·문규현·백옥인·진관·홍근수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논,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2개 단체)

